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9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 조은희・박정하・신성범

김용태 · 강명구 · 서천호

김미애 · 김장겸 · 서지영

김예지 · 신동욱 · 서범수

박성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, 시설 폐쇄, 공사중지·정지, 시설 사용금지·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,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앞으로는 기후변화·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,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,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이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 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생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
	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
	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
	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
	<u>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</u>
	를 마련하여야 한다.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
	항까지와 같음)